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41
----------	------

2022. 6. 21.(화)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6월 14일

-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민원인의 납부 편의 증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한 수수료 징수방법 확대(안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항목 정비(안 별표 1)

## 3. 검토보고 요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징수방법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시 수입증지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던 조항을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sup>1)</sup> 및 「전자정부법」 제14조<sup>2)</sup>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종이수입증지는 1950년대 전산민원접수대장 등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지방세, 사용료, 각종 수수료 등을 현금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표로 그동안 위·변조가 용이하며 재사용 문제 등 공무원의 부패 발생뿐만 아니라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 등으로 행정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구매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해 왔음.
- 이에 행정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본 개정안은 타당함.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2조 제2항 관련)’의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충청북도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정비한 것임.

- 「지방자치법」 제156조<sup>3)</sup>에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의 경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전국통일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국가행정 위임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행정기본법」 제35조<sup>4)</sup>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별표 1] 개정안 “가. 일반행정관계” 부문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1)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음.

3)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행정기본법」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국통일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에서 제외한 것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현 행			개정안
구 분	기준	금액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b>가. 일반행정관계</b>			
1)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가) 신규	1건	5,000	삭제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

- 둘째, [별표 1] 개정안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부문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1), 2), 3)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음.
- “1)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신고 및 변경신청”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sup>5)</sup>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 업무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
- “2), 3)의 석유판매업(임반,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의 경우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sup>6)</sup>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업무가 위탁된 바, 이 또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5) 「전기안전관리법」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한국석유관리원·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 12. 9., 2012. 5. 14., 2015. 7. 24., 2017. 9. 26., 2019. 9. 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현 행			개정안
구 분	기준	금액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b>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b>			
1)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신고 및 변경신청	1건	1,000	삭제
2)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
3)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1건	20,000	"

- 셋째, [별표 1] 개정안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부문에서 아래 표와 같이, 4), 5), 6)의 경우 수수료 대상을 추가함.

- 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7)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이 추가 되었으며,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sup>8)</sup>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현 행	개정안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b>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b>	<b>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b>
4) 승강기 <u>유지관리업</u> 등록신청	4) 승강기 <u>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u> 등록신청
5) 승강기 <u>유지관리업</u> 변경등록 신청	5) 승강기 <u>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u> 변경등록 신청
6) 승강기 <u>유지관리업</u> 등록증 재발급 신청	6) 승강기 <u>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u> 등록증 재발급 신청

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76조(수수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 법 제12조제2항, 제18조제2호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7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

8)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종류	표준금액
10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 넷째, [별표 1] 개정안 “다. 건설관계” 부문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1), 2)에 대한 수수료 규정은 삭제하였음.

- 이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sup>9)</sup>에 관계 수수료 부과기준 및 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위법임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현 행			개정안
구 분	기준	금액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b>다. 건설관계</b>			
1)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1건	1,200	삭제
2) 건설기계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신청	1건	1,200	“

- 다섯째, [별표 1] 개정안 “자.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관련” 부문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1)부터 8)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음.

-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sup>10)</sup>개정에 따라 사무 처리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9)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수수료)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 및 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대당 1천원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 행			개정안
구 분	기준	금액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b>자.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관련</b>			
1) 비행선 이용 허가신청	1대	400,000	삭제
2) 비행기.선박 양측면 허가신청	1대	10,000	"
3) 사업용 노선버스 양측면 허가신청	1대	2,000	"
4) 열차.전동차 양 측면 신고신청	1량	2,000	"
5) 비행선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200,000	"
6) 비행기.선박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5,000	"
7) 사업용 노선버스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1,000	"
8) 열차.전동차 이용 광고내용 변경신고	1량	1,000	"

- 마지막으로, [별표 1] 개정안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전국통일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 징수 항목들을 삭제하였음.

- 이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수료 표준금액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는 없음.

현 행			개정안
구 분	기준	금액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b>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b>			
7)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	삭제
8)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1건	30,000	"
9) 전기공사업의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 가) 양도.양수 또는 법인 합병 신고 나) 상속 신고	1건 1건	30,000 5,000	"
10)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가)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 나)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 ※ (8), (9)는 공사업자단체가 현금으로 징수	1건 1건	5,000 5,000	"
11)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등록.양도.양수.합병) 신청 등 가) 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50,000	"

현 행			개정안
구 분	기준	금액	
나) 종합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다)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30,000	
라)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마) 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20,000	
바)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15,000	
사) 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	
아) 종합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자) 전문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30,000	
차) 전문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12)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	1건	5,000	"
가) 변경등록(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신고	1건	5,000	
나) 등록증 재발급			
<b>라. 보건사회위생관계</b>			"
1)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
3) 종합병원 개설 변경허가	1건	40,000	"
4)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변경허가	1건	40,000	"
<b>마. 문화 공보관계</b>			"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	"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
<b>바. 체육시설업 관계</b>			"
1) 골프장,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1건	100,000	"
2) 골프장,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1건	30,000	"
3) 골프장, 스키장업 등록신청	1건	50,000	"
4) 골프장,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
5)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	"
6)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1건	20,000	"
7)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신청	1건	30,000	"
8)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
<b>사. 자격시험 관련</b>			"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
<b>아. 교통관계</b>			"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1대	1,400	"

현 행			개정안
구 분	기준	금액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신청 또는 임대허가 신청	1대	1,400	"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징수방법을 확대하고,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제증명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2조 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 액
<b>1. 증명</b>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
2) 하자보증금 납부 증명	1통	300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00
4) 실적증명 (공사, 물품, 용역)	1통	300
나. 기타 제증명		
1) 원자재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1통	3,500
나) 확정소요량	1통	1,200
2)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
<b>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b>		
가. 일반행정관계		
1)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350
2) 기타 각종 인가, 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신청	1건	50,000
2)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3)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	4,000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u>충청북도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청구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사무를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 (내부위임을 제외 함)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징수한다.</p> <p>③ 충청북도 수입증지 구입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p>	<p>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u>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u></p> <p>②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제증명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22. 1. 11. 법률 제1874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12. 시행 예정]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